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3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제221913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6조제2항제3호)	3
나. 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안 제20조의2 신설 등)	8
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41조의2 신설 등)	20
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47조의2 신설)	28

I.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제221913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8.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에도 수 년에 걸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

후에도 사업이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의 부재로 지역 주민 등 관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3.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나.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다. 민간사업자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6조제2항제3호)

개정안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홍보·투자 및 재정지원-----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¹⁾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 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 계획에는 ①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②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④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지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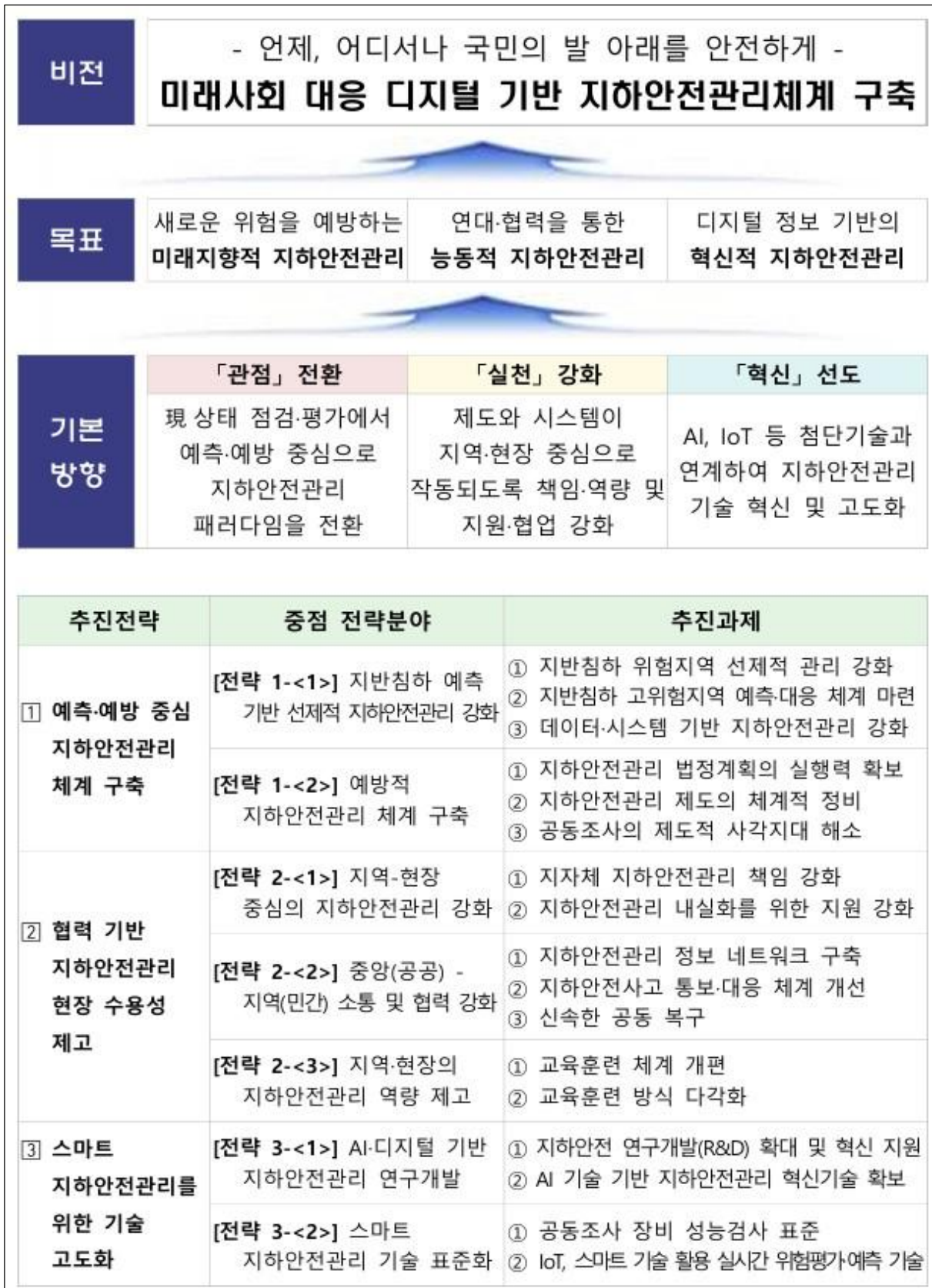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살펴보면, ①예측·예방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②제도와 시스템이 지역·현장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책임 강화·지원 확대, ③AI, IoT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지하안전관리 기술 혁신 및 고도화를 정책 기본 방향으로 하여, 7개 중점 전략분야에 17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²⁾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국토교통부, 2024.12. pp.35.-36. 참고

【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



※자료: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국토교통부, 2024.12. p36.

국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투입이 필수적인데, 동 계획은 각각의 추진과제 이행과 관련된 재정 투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기본법」,³⁾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⁵⁾ 등은 해당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각 재원조달 및 그 운용, 재원 확보, 재정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타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의 입법례와 같이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경우에도 그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3) 「문화기본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하려는 것으로,

국가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 투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노후 지하시설물의 증가, 도심지 지하 개발 확대 등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에 ‘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장기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⁶⁾

6)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반탐사 장비 확충, 지방정부의 지반탐사 용역비 보조 등 예산 사업을 통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함.

나. 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안 제20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사업을 시행한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지하개발사업 완료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0조의2(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의 전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 ----- -----

현행	개정안
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3. (생략) ② ~ ⑥ (생략)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9. (생략) ②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 -----.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형벌을 받은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u>자는 제외한다)</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⁷⁾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완료 후 각각의 단계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지하개발사업 사업 시행 전에는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⁸⁾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지하개발사업의 시행 중에는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라 함)하고, 그 결과 지하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⁹⁾

-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지하시설물관리자’¹⁰⁾로 하여금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시설물관리자’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¹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 시행 전 및 시행 중의 안전관리는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시행 완료 후의 안전관리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 대하여 주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상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상 사업 시행 완료 후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 완료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지하개발사업 완료 후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지하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른 지하개발사업 사후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 제20조의2**는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공사를 완료한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안 제35조제1항제2호**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지하개발 사업자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행법 제3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¹²⁾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 대상”이라 함)을 지정·고시하고,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며,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게 됨.

다음,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56조제1항제1호¹³⁾ 및 현행법 제51조·제52조·제54조¹⁴⁾에 따라 형벌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개정안 및 개정안과 연계되는 현행법 규정에 따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의무와 위반 시의 벌칙 및 과태료는 다음과

13) 개정안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의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정리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등 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위 반 시 제재
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 (지하개발 사업자)	-안 제20조의2 신설- ○지하개발사업자: <u>지하개발 사업 완료 후</u>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u>모니터링 실시</u> ※대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지하개발공사 ※기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 제출</u> ○국토교통부장관: <u>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모니터링 결과 전달</u>	-안 제5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u>사후 모니터링의 미실시</u> 또는 <u>불성실 수행</u> → <u>지반침하</u>를 일으켜 <u>공중의 위험</u>을 발생 ⇒ <u>10년 이하</u>의 징역 <그 외 현행법에 따른 벌칙 적용> -현행법 제51조제2항-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현행법 제52조제1항-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법 제52조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 제56조제1항제1호 신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u>사후 모니터링의 미실시</u> 또는 <u>불성실 수행</u>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u>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u> ⇒ <u>2천만원 이하</u>의 과태료
사후 모니터링 결과 지반침하	-안 제35조제1항제2호 신설- ○지하시설물관리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u>사후 모니터링 결과</u> <u>지반침하의 우려</u>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행법 제51조제1항제9호- ○제35조제1항에 따른 <u>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미실시</u> 또는 <u>불성실 수행</u> → <u>지반침하</u>를 일으켜 <u>공중의</u>

구 분	주 요 내 용	위 반 시 제 재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실시 (지하시설물 관리자)	경우 <u>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u> ⇒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이후 절차는 현행과 동일> ○시장·군수·구청장: 검토 결과 지반 침하 위험이 확인된 경우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 ⇒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 ⇒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으 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 중점관리대상 지정 해제	<u>위험</u>을 발생 ⇒ <u>10년 이하</u>의 징역 -현행법 제51조제2항-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 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 <u>무기 또는 3년 이상</u>의 징역 -현행법 제52조제1항-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 의 죄를 범한 자 ⇒ <u>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u> 또 는 <u>5천만원 이하</u>의 벌금 -현행법 제52조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 를 범한 자 ⇒ <u>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u> 또 는 <u>1억원 이하</u>의 벌금 -현행법 제54조제1항제8호-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 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u>2년 이하의 징역</u> 또는 <u>2천만원 이하</u>의 벌금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자의 사업 시행 완료 후 모니터링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지하개발사업의 규모, 모니터링의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모니터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하개발사업 완료 후 해당 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관리책임은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개별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부여되어 있어 법 개정 시 기존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와 중복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고, 지하개발사업 과정에서의 굴착 후 되메움이 완료되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지하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모니터링 의무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사후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 빈도 등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는 유지관리와의 차별적 운영 가능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41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략) <u><신설></u> 15. ~ 17. (생략)	<u>제41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6조(과태료) ③ -----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u>16. ~ 18. (현행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u>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762건으로 연 평균 약 15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2021~2025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 평균	비고
142	177	163	101	179	762	152.4	*2020년: 284건 발생

※자료: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Jiha safety Information System)

특히, 2025년에는 서울 명일동,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반침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사회재난¹⁵⁾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지반

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하에 대하여 「재난안전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¹⁶⁾¹⁷⁾이 발의되기도 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¹⁸⁾이 되는 사회재난의 유형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¹⁹⁾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³²⁰⁾을 개정한 바 있음.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831호, 2025.4.15.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발췌)

-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880호, 2025.7.31.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발췌)

-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제2항 및 제82조제2항제1호²¹⁾은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5.9.23. 일부개정, 2025.10.2. 시행)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다.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u>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2017. 1. 17.>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안전법」 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²²⁾ 「승강기 안전관리법」,²³⁾ 「고압가스 안전관리법」²⁴⁾ 등과

부과한다.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 가입)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같이 관리주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입법례들이 있음.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반침하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입법동향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들을 고려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재난안전법」 및 개정안의 관련 규정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재난안전법」	개 정 안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u>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u>	○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자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관리 중에 발생한 지반침하로 <u>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u>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구분	「재난안전법」	개 정 안
	<u>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u>	<u>상의 손해</u> 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u>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u>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 <u>과태료</u>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u>과태료</u> 부과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최근 5년 동안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 평균 발생 사고는 152.4건이고, 그에 따른 연 평균 피해는 사망자 0.8명, 부상자 10명, 차량 피해 16대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음.

【최근 5년(2021~2025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단위: 건, 명, 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 평균
사고 발생		142	177	163	101	179	762	152.4
피해 발생	사망	－	1	－	1	2	4	0.8
	부상	2	23	10	6	9	50	10
	차량	10	15	21	14	20	80	16

※자료: 국토교통부[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Jiha safety Information System)], 지방자치단체의 지반 침하 발생 신고 기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손해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는 등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 집중하고 개정안과 같은 책임보험 가입 전면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바,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소요 비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의 범위 설정 여부, 안전관리체계²⁵⁾의 강화 등을 통한 지반침하 사고 예방 효과 등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5)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안전점검,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47조의2 신설)

개정안은 지반침하의 예방 및 지하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지하안전정보 체계의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2(정보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의 예방 및 지하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47조²⁶⁾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동 정보체계에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 제21조의²²⁷⁾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관리를

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7)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지하안전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안전정보 체계에서 수집·관리하는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관련 통계 자료 등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²⁸⁾의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21조의2(정보의 공개)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JIS에서 수집·관리하는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관련 통계 자료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 공개로 인하여 지하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정보 공개로 인하여 지하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제47조제3항²⁹⁾ 및 현행법 시행령 제42조제3항³⁰⁾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③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 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한 것에 근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³¹⁾가 다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3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정보의 공개 원칙 및 예외적 비공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및 개정안의 내용 비교 】

구분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개정안
공개 주체	<u>운영기관의 장</u>	<u>국토교통부장관</u>
공개 대상	<u>국민</u>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u>이해관계자</u>
공개 대상 정보	-법 제47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정보체계에서 수집·관리하 는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관련 통계 자료 등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
공개 요건 등	(특별한 요건 없음) ⇒ 공개 <u>할</u> 수 있다.	- <u>지반침하의 예방 및 지하안전의 확보</u> 를 위하여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 가 <u>공개를 요청한 경우</u> ⇒ 공개 <u>하여야</u> 한다.
공개 방법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u>정보공개시스템</u> 등을 통하여 공개	정보 공개의 <u>대상 및 방법 등</u>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함</u> .
비공개 요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u>비공개 대 상 정보</u> 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 공개로 인하여 <u>지하안전 확보 에 중대한 지장</u> 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 - 그 밖에 <u>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 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상 필요</u> 한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 상 정보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지하안전정보체계 정보의 공개 대상을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로, 공개 요건을 ‘지반침하의 예방 및 지하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³²⁾을 명시하면서,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그 목적에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례와 같이 국민의 일반적인 정보공개 요청 권리 및 정보 공개 원칙, 예외적인 비공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정보공개 요청 주체를 이해관계자로 한정하는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제한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도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정보, 지반탐사 결과 및 공동(空洞) 복구 현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정보는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